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532호(號) 1928년(昭和 3) 10월 4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81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77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국선[朝鮮總督府鐵道局線]과 철도성선[鐵道省線] 간[間] 및 조선총독부철도국선[朝鮮總督府鐵道局線] 경유[經由]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선[南滿洲鐵道株式會社線]과 철도성선[鐵道省線] 간[間] 여객 및 하물 연대운수규칙[旅客及貨物連帶運輸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10월 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9조(條)제4항(項) 중(中) 「제26조(條)의2」를 「제26조(條)의3」으로 개정함.

제15조(條) 중(中) 「제68조(條)의5」를 「제68조(條)의4」으로 개정함.

제24조(條)의2 품명(品名), 포장(包裝), 발착구간(發著區間), 하송인(荷送人) 및 수하인(受荷人)을 단일(單一)로 하고 또 동일(同一)한 열차(列車) 또는 기선(汽船)으로 동시에 탁송(託送)하는 것은 5개(箇) 이상·25개(箇) 이내(以內)에 한하여 이것을 1구(一口)로 하여 별도로 정(定)한 곳에 의해 특별운송(特別運送)의 취급을 함을 득(得)함.

제28조(條) 중(中) 「제159조(條)에서 제165조(條)까지」를 「제160조(條)에서 제165조까지」로, 「제163조(條)」를 「제158조(條)의2」로 개정(改正)함.